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Professional Sports
Anti-Doping Rules**

2021년



전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KADA)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도핑방지 활동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이 규정은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핑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기 시행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2016년 2월 16일 제정·시행되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
제2조(목적)	1
제3조(용어의 정의)	1
제4조(적용 범위)	5
제5조(의무)	6
제6조(프로단체의 역할과 책임)	6
제7조(선수의 역할과 책임)	7
제8조(구단 및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	7

제2장 도핑방지규정위반

제9조(도핑방지규정위반의 정의)	7
-------------------------	---

제3장 금지목록

제10조(금지목록 국제표준의 적용)	8
제11조(금지약물과 금지방법)	8

제4장 치료목적사용면책

제12조(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제13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신청)	9
제14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사후신청)	10
제15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 기준)	10
제16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결정)	11
제17조(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의 효력)	11
제18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기간 만료 또는 취소)	11
제19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재심의)	12

제5장 검사 및 조사

제20조(검사와 조사의 목적)	12
제21조(검사 권한)	12
제22조(검사 절차)	13
제23조(경기기간 중 검사)	13

제24조(경기기간 외 검사)	13
제25조(프로구단 검사명부)	13
제26조(프로선수 검사명부)	14
제27조(복귀 검사)	14
제28조(조사 및 정보수집)	14

제6장 시료 분석

제29조(분석기관의 결정)	15
제30조(시료 분석과 보고의 기준)	15
제31조(시료의 추가 분석)	15
제32조(시료와 데이터 연구)	15

제7장 결과관리

제33조(결과관리 권한)	15
제34조(분석 결과의 접수 등)	16
제35조(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대한 검토와 통지)	16
제36조(B 시료 분석)	16
제37조(임시출전정지)	17
제38조(청문 권리의 포기)	18
제39조(청문없는 결정)	18
제40조(결과관리의 완료)	18

제8장 제재위원회

제41조(구성)	19
제42조(권한)	19
제43조(제척·회피·기피)	19
제44조(청문회 개최)	19
제45조(위반혐의자 진술권)	20
제46조(증명기준)	20
제47조(제재 결정의 통지)	21

제9장 제재

제48조(제재의 해석)	21
제49조(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검출, 사용 또는 보유에 대한 기본 제재)	

.....	22
제50조(제재의 감경)	22
제51조(기타 위반에 대한 기본 제재)	23
제52조(제재의 가중)	24
제53조(제재의 면제)	24
제54조(과실 이외 사유에 의한 제재의 추가 감경 또는 유예)	24
제55조(재위반)	24
제56조(잠재적인 재위반에 관한 특별규정)	24
제57조(비용의 청구)	25
제58조(제재의 기산)	25
제59조(출전정지 또는 임시출전정지 중 참가 금지)	26
제60조(출전정지 또는 임시출전정지 중 참가 금지 의무 위반)	26
제61조(선수의 신분에 따른 제재기준)	27
제10장 출전정지부과 외 제재	
제62조(개인종목의 제재)	27
제63조(단체종목의 제재)	28
제11장 구단에 대한 후속 조치	
제64조(구단에 대한 조치)	28
제12장 항소	
제65조(항소의 관할)	29
제66조(항소기구의 권한)	29
제67조(항소권자)	29
제68조(항소 절차)	29
제69조(항소기구 결정의 통지 및 효력)	30
제13장 기밀 유지	
제70조(비밀누설금지)	30
제71조(정보의 공개대상)	30
제72조(제재와 관련한 일반공개)	31
제73조(통계 보고)	32

제74조(개인정보)	32
제14장 교육	
제75조(교육의 시행)	32
제15장 보칙	
제76조(징계 시효)	33
제77조(규정의 개폐)	33
제78조(해석)	34
제79조(일부무효)	34
부칙	34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정 2016.02.16.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6.02.18.

개정 2019.02.27.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9.05.16.

전부개정 2021.02. .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21. .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Korea Professional Sports Anti-Doping Rules, 약칭: KPSADR)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가 동법 제3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스포츠의 도핑방지 활동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Testing)”란 검사배분계획의 수립, 시료채취, 시료 관리, 분석기관으로의 시료 운반을 포함하는 도핑관리 절차의 일부를 말한다.
2. “결과관리(Results Management)”란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한 혐의 확인부터 제재심의 또는 항소에 따른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말한다.

3. “경기기간 외(Out-of-Competition)”란 경기기간 중이 아닌 기간을 말한다.
4. “경기기간 중(In-Competition)”이란 리그로 운영되는 종목별 프로스포츠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 전 기간을 말하며, 시범경기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포스트시즌에 참가하지 않는 구단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경기기간 외로 본다. 개인종목 또는 단일 대회의 경우, 선수가 참가 예정인 경기의 전일 오후 11:59부터 해당 경기 및 그 경기와 관련된 시료채취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금지목록(The Prohibited List)”이란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규정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문서를 말한다.
6. “근무일(Working Day)”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7. “도핑관리(Doping Control)”란 검사, 조사, 소재지정보, 시료채취 및 관리, 분석기관에 의한 분석, 치료목적사용면책, 결과관리를 포함하여 검사 배분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결과조치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와 과정을 말한다.
8. “미성년자(Minor)”란 만 18세 미만의 자연인을 말한다.
9. “보유”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실체적으로 보유하는 상태 또는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이 소재하는 장소에 대하여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일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를 받기 전에 보유 의사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도핑방지위원회에 명확하게 밝혀 보유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유 사실만으로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이 정의에 상반되더라도, 전자거래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구매 시에는 구매자의 보

유가 성립한다.

10. “부정거래(Trafficking)”란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제3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거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판매, 증여, 수송, 발송, 운반, 전달 또는 분배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인 치료목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정할 만한 사유로 사용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관여한 선의의 의료종사자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 “부정행위(Tampering)”란 금지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핑관리 과정 중에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의 이행 또는 불이행의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 시료채취를 방해하는 행위, 시료의 분석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도핑방지위원회,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제재위원회 또는 항소기구에 제출하는 서류를 위·변조하는 행위,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하는 행위, 도핑방지위원회, 제재위원회 또는 항소기구를 기망하여 결과관리 또는 제재의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외에 도핑관리를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비정상수첩결과(Adverse Passport Findings)”란 선수수첩관리단의 전문가 세 명이 누적된 검사에 따른 선수의 생체정보를 검토한 후 도핑의 가능성이 높음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비정상분석결과(Adverse Analytical Findings)”란 선수의 시료에서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나 금지방법의 사용 증거를 입증하는 분석기관의 보고를 말한다.
14. “사용(Use)”이란 방법을 불문하고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바르거나, 섭취, 주입 또는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선수지원요원(Athlete Support Personnel)”이란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과 선수의 경기 참가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업무적 또는 의료적 지원행

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 “시도(Attempt)”란 도핑방지규정위반에 이르는 계획된 행위 과정에서 실질적인 위반 단계의 행위에 의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도에 연루되지 않은 제3자에게 발각되기 전에 해당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시도만을 근거로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17. “오염된 제품(Contaminated Product)”이란 제품의 라벨 또는 합리적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공개되지 않은 금지약물이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18. “임시출전정지(Provisional Suspension)”란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최종결정이 있기 전에 경기 참가를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19. “전문체육(Elite Sport)”이란 「국민체육진흥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로 등록한 자가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0. “정규시즌 총 경기수(Total Number of Team Competition in Regular Season)”란 프로스포츠 단체가 주관하는 종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리그의 경기수를 기준으로 하며, 구단별 경기 수는 (사)한국야구위원회 주관 매년 정규리그 경기수 144경기, (사)한국배구연맹 주관 매년 정규리그 경기수 남자 36경기, 여자 30경기, (사)한국농구연맹 주관 매년 정규리그 경기수 54경기, (사)한국여자농구연맹 주관 매년 정규리그 경기수 35경기를 말한다. 구단별 경기 수는 프로단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1. “청문(Hearing)”이란 선수 등 규정 위반혐의자에게 제재위원회 또는 항소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22. “출전정지(Suspensions)”란 정규시즌 경기 또는 정규투어 대회의 참가

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이란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 있고, 제15조의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24. “투여(Administration)”란 타인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 공급, 감독, 조력 또는 가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합법적인 치료목적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정할 만한 사유로 사용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관여한 선의의 의료종사자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5. “포스트시즌(Post Season)”이란 정규리그 종료 후 최종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치르는 모든 경기를 말한다.
26. “프로구단 검사명부(Team Testing Pool)”란 도핑방지위원회가 경기기간 외 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관리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의 회원구단 명부를 말한다.
27. “프로선수 검사명부(Professional Athlete Testing Pool)”란 도핑방지위원회가 경기기간 외 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관리하는 프로스포츠 선수 명부를 말한다.
28. “프로선수(Professional Athlete)”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한다.
29. “B 시료(B Sample)”란 선수로부터 시료채취 후 분석기관에 전달된 두 개의 시료 중 하나로 1차 분석에 사용된 A 시료의 동질성 확인을 위해 선수 등의 요청에 따라 2차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시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이하 “프로단체”라 한다)와 등록선수 또는 가입회원(이하 “선수”라 한다) 및 선

수지원요원에게 적용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프로단체에 입단 또는 회원이 되기 위한 선발 성격의 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
- ③ 본 규정의 예외로서 상급단체(FIFA, 대한축구협회 등)가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하는 프로축구는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75조에 따른 교육 관련 조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제5조(의무) ① 프로단체 소속 회원구단과 선수, 선수지원요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도핑방지와 관련한 도핑방지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구단,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은 항상 도핑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 ③ 구단,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은 이 규정에 따른 도핑관리 절차에 부적절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6조(프로단체의 역할과 책임) ① 프로단체는 프로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에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의 수용과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프로단체와 회원구단,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② 프로단체는 이 규정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재위원회 및 항소기구에서 결정한 제재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프로단체는 소관 종목에서 도핑검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프로단체는 도핑방지위원회와 협력하여 선수 등 관계자에 대한 도핑방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⑤ 프로단체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의 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보 또는 정보를 취득할 경우, 도핑방지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와 관련한 도핑방지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선수의 역할과 책임) 선수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2. 언제나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체내에 유입된 모든 성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지도자 또는 의료진에게 선수 자신에게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알리고, 그들의 지원이나 의료처치가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할 책임을 진다.
5. 규정 위반과 관련한 도핑방지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8조(구단 및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 구단 및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2. 선수의 검사 프로그램에 협조한다.
3. 선수가 도핑방지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규정 위반과 관련한 도핑방지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제2장 도핑방지규정위반

제9조(도핑방지규정위반의 정의)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1.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2.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
3. 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채취의 실패를 야기하는 경우
4. 프로선수 검사명부에 포함된 선수가 12개월 이내에 검사불이행과 제출불

이행 횟수를 모두 합쳐 3번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을 기록하는 경우

5.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6.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하는 경우
7.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8.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선수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 또는 투여 시도하는 경우
9.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위반을 공모하거나 공모를 시도하는 경우
10.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한국도핑방지규정」 또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 중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과 연루되는 경우
11.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도핑방지규정위반 또는 이 규정의 비준수 혐의와 관련하여 타인의 제보를 제지하거나 그에 대해 보복 또는 위협하는 경우

제3장 금지목록

- 제10조(금지목록 국제표준의 적용)** ① 금지목록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The Prohibited List)에 따른다.
- ② 「금지목록 국제표준」 중 특정 종목에서만 추가로 금지되는 약물 중 해당 종목의 국제경기연맹이 금지하는 약물은 이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금지된다.
-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선수의 소속 구단에 금지목록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금지약물과 금지방법)** ① 금지목록은 상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과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으로 구분된다.

-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프로단체와 협의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공표한 금지목록과 달리 이 규정에 적용되는 금지목록을 정할 수 있다.
- ③ 금지목록 또는 분석기관 기술문서에서 별도로 금지약물을 결정기준의 한계 수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의 시료에서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검출된 양과 관계없이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된다.
- ④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을 경기기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경기기간 중 검사에서 해당 약물이나 그 대사물질, 표지자에 대한 비정상분석결과가 보고되지 않는 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되지 않는다.

제4장 치료목적사용면책

제12조(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심사하고 승인하기 위하여 도핑방지위원회가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한 선수 또는 특정구단과 관련이 있는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위원은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심사 및 승인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치료목적사용면책 위원은 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알게 된 선수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접수된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제13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신청) ① 선수 또는 선수로부터 신청을 위임받은 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핑방지위원회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여야 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판정에 필요한 의료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4조에 따른 사후신청을 제외하고, 선수는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도핑방지위원회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③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신청은 온라인 프로그램, 팩스, 이메일 등 도핑방지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방법에 따른다.
- ④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간만료일 이전 또는 다시 필요하게 될 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선수가 전문체육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한국도핑방지규정」 또는 소관 국제경기연맹의 절차에 따라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사후신청)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사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1. 응급 또는 긴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의료적 상태에 있는 경우
- 2.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사전신청이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3.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을 치료목적으로 경기기간 외에 사용한 경우

제15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 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1. 관련 임상 증거에 따라 진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해야 한다.
- 2.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치료 후 선수를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으로 인해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목적을 위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3.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4.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사용의 필요성이 이전 사용 여부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제16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결정)** ①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및 모든 구비서류가 접수된 후 근무일 7일 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이 경기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경기의 시작 전에 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이 승인 또는 불승인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신속하게 선수 또는 소속 구단에 해당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의 효력)** ① 도핑방지위원회가 승인한 치료목적 사용면책은 국내에서만 유효하며, 국제대회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제수준의 선수이거나 국제대회에 참가 예정인 선수는 해당 검사주관단체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② 전문체육과 관련하여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은 국내 프로스포츠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된다.
- ③ 「세계도핑방지규약」의 가맹기구인 국제경기연맹에서 승인받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자동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타 해외 기구에서 승인받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도핑방지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및 사용 시도, 보유, 투여 또는 투여 시도가 제4장에 따라 승인 또는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되지 않는다.

- 제18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기간 만료 또는 취소)** ① 이 규정에 따라 승인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승인된 기간 만료 시에 추가 통지 또는 그 밖의 형식상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만료된다.

- ② 선수가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에서 부과한 요구 사항이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은 취소될

수 있다.

- ③ 선수가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 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 이전에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에 따라 해당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보유 또는 투여한 경우에는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되지 않는다.
- ④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제19조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번복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제19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재심의) ① 선수가 제16조에 따른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도핑방지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재심의 결정은 신청이 접수된 후 근무일 7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도핑방지위원회는 이를 신속하게 선수 또는 소속 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1차 심사와 결정에 관여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위원은 재심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본조에 따른 재심의 결정은 최종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 검사 및 조사

제20조(검사와 조사의 목적) 검사와 조사는 도핑방지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검사와 조사는 이 규정 및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 및 조사 관련 지침에 따라 수행된다.

제21조(검사 권한)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하거나 회원인 선수에 대하여 국내외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소변, 혈액 채취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한다.
- ③ 검사대상 인원은 도핑방지위원회의 연간 검사배분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표적검사, 추적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검사 절차) ① 시료채취 절차는 검사시행 당시 유효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른다.

- ② 검사는 종목별 도핑검사 운영매뉴얼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3조(경기기간 중 검사) ① 시료를 채취할 경기 또는 대회, 검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도핑방지위원회에 있다.

- ② 선수는 시범경기,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투어 시즌 중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③ 단체종목의 비시즌 기간 중 열리는 단일 대회, 골프의 시드전 등은 경기기간 중 검사로 간주된다.

제24조(경기기간 외 검사) 선수는 경기기간 외 기간에 불시에 사전 미통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프로구단 검사명부)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의 예측 불가능성을 통한 도핑 억제 및 효율적인 도핑관리를 위하여 “프로구단 검사명부”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단은 도핑방지위원회의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비시즌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팀의 소재지를 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재지정보가 항상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구단이 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소재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단의 합숙 장소(예: 훈련지, 임시 숙소, 호텔 등)
 2. 훈련 일정, 그 밖의 정기적인 활동
 3. 공식적인 훈련 금지 기간

제26조(프로선수 검사명부)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제25조 프로구단 검사명부와 별도로 “프로선수 검사명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가 프로선수 검사명부에 포함될 경우, 프로단체를 통해 선수와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프로선수 검사명부에 포함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해당 명부에서 제외되었다는 서면통지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명부에 남아 관리대상이 된다.

④ 프로선수 검사명부에 포함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비시즌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자신의 소재지를 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재지정보가 항상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선수의 소재지정보는 철저히 기밀로 유지되며, 도핑관리 계획의 수립, 조정 또는 시행, 선수생체수첩 또는 그 밖에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지원,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와 관련한 절차의 지원 목적으로만 이용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제공된 소재지정보가 상기 목적과 관련이 없게 되는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

⑥ 프로선수 검사명부에 포함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지정한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선수의 거주지(예: 자택, 훈련지, 임시 숙소, 호텔 등)
2. 훈련 일정, 그 밖의 정기적인 활동
3. 검사가 가능한 ‘특정 60분’과 그 장소

제27조(복귀 검사) 규정 위반으로 출전정지 중인 선수는 경기 복귀 전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복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선수는 요구받는 경우 자신의 소재지정보를 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 및 정보수집)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도핑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핑방지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잠재적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의 확인 또는 그 이후의 결과관리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시료 분석

제29조(분석기관의 결정) 도핑방지위원회는 시료 분석을 위한 분석기관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시료 분석과 보고의 기준) 분석기관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분석기관 국제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에 따라 시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시료의 추가 분석) 도핑방지위원회는 제9조 제1호의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선수에게 통지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횟수에 제한 없이 해당 시료에 대하여 반복 또는 추가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선수의 동의 또는 제재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당 시료에 대한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다.

제32조(시료와 데이터 연구) 시료, 분석 데이터 또는 도핑관리 정보는 선수의 서면 동의 없이는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는 시료, 분석 데이터 또는 도핑관리 정보는 특정 선수를 역추적할 수 없도록 신원정보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제7장 결과관리

제33조(결과관리 권한) 도핑방지위원회는 내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수와 선수지원요원에 대한 결과관리 권리가 있다.

제34조(분석 결과의 접수 등)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분석기관으로부터 전자우편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지정한 시스템을 통하여 시료의 분석 결과를 통지받는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프로단체 또는 선수에게 ‘음성’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대한 검토와 통지)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에게 도핑방지규정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프로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프로단체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수와 소속 구단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통지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국적
2. 종목
3. 경기기간 중 또는 경기기간 외 검사 여부
4. 시료채취 날짜
5. 분석기관에서 보고받은 분석 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정보
7. 제9조 제1호 외 위반의 경우 위반한 규정과 위반 혐의의 근거

제36조(B 시료 분석) ① 선수 또는 선수대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B 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인정하고 B 시료 분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A 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절차상 필요한 경우에 도핑방지위원회의 비용으로 언제든지 B 시료의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혐의 통지 시 B 시료 분석 요청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고, 선수가 B 시료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에 분석기관과 협의하여 B 시료 분석을 위한 일정 및 시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B 시료 분석 일시는 선수, 도핑방지위원회와 분석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⑤ 선수 또는 선수대리인은 B 시료의 확인, 개봉 및 분석과정에 입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⑥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분석기관은 B 시료의 확인, 개봉 및 분석과정에 선수와 선수대리인이 모두 입회하지 않을 경우, 제3자를 입회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⑦ B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A 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체 검사는 음성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A 시료 비정상분석결과를 근거로 한 혐의 통지는 철회되고 이와 관련한 결과관리 절차가 일체 중단되며, 선수에게 부과된 임시출전정지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도핑방지위원회가 제9조 제2호에 따른 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B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A 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비정상분석결과에 따른 결과관리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제37조(임시출전정지)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의 시료에서 특정약물 또는 특정방법을 제외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에 관한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비정상수첩결과가 접수되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혐의 통지 시 해당 선수에게 의무적으로 임시출전정지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특정약물, 특정방법에 따른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제9조 제1호 이외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선택적으로 임시출전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선택적 임시출전정지는 제재위원회의 결정 이전에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③ 임시출전정지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에게 이를 통지한 날 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도핑방지위원회가 임시출전정지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은 자발적으로 임시출전정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은 언제든지 임시출전정지 수용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 시에는 이미 이행한 임시출전정지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38조(청문 권리의 포기) ①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은 언제든지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제재 수용 의사를 밝힘으로써 제재위원회 및 항소기구 절차상 청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제35조의 협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핑방지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제39조(청문없는 결정) ① 제38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청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제재위원회 및 항소기구 절차상 청문을 시행하지 않고 청문없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결정 사유와 그 근거를 명시하여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날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프로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프로단체는 즉시 선수와 소속 구단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③ 본조에 따른 청문없는 결정은 확정적이며, 선수는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제재위원회 및 항소기구의 절차에서 다툴 수 없다.

④ 본조에 따른 결정 내용은 제72조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다.

제40조(결과관리의 완료)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결과 관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 또는 결과관리 진행 중에 은퇴 등의 사유로 인해 프로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해당 결과관리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② 프로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 이를 도핑방지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은 부과된 제재 기간을 이행하기 전에는 경기에 복귀할 수 없다.

제8장 제재위원회

제41조(구성)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의 도핑방지규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제재위원회 위원은 법률, 스포츠, 의료, 과학 등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도핑방지 경험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이 공석이 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권한) ① 제재위원회는 회부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청문을 시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특히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재위원회는 도핑방지위원회를 비롯한 제3자의 간섭 없이 사건을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청문 진행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제43조(제척·회피·기피) ① 제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부된 사건을 담당할 대체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에게 제척·회피·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위원회의 다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체한다.

제44조(청문회 개최) ① 제재위원회는 제재 결정에 앞서 규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요청할 경우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

할 수 있다.

- ② 청문회는 단독 또는 3명의 제재위원회가 주관할 수 있다.
- ③ 청문회에는 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의 직접 출석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화상 장치 등을 이용한 진행도 가능하다.
- ④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 ⑤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청문회 일정을 통지받은 후 참석하지 않으면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권될 수 있다.
- ⑥ 도핑방지위원회는 청문회 내용을 녹음 또는 기록하고, 이를 소유하고 보관한다.

제45조(위반혐의자 진술권) ① 제재위원회는 규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에게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증명기준) ① 규정 위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도핑방지위원회에 있다. 이 증명의 기준은 청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하였음을 도핑방지위원회가 입증하였는가의 여부이다.

- ② 추정 사실에 대한 반증이나 확립된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한 반박 책임이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에게 있는 경우의 증명기준은 증거 간의 우월성, 즉 개연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 ③ 제9조 제1호와 제2호 위반은 선수 측의 고의나 과실, 부주의 또는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규정 위반이 되며,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의 성공 여부는 규정 위반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외 위반은 선수 측의 고의, 과실, 또는 부주의가 있는 경우에 규정 위반이 된다.
- ④ 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실은 자인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되

어야 한다.

- ⑤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분석기관은 「분석기관 국제표준」에 따라 시료 분석 및 관리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반박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⑥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이나 도핑방지에 관한 일반규정 또는 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은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된 분석 결과 또는 다른 증거를 무효화 하지 않으며,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반박증거가 되지 않는다. 다만,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에 근거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원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그러한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⑦ 판단 권한이 있는 법원 또는 직무 관련상 징계기구 등에서 확정된 판결이나 결정으로 증명된 사실은 그 사실과 관련된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에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다만, 해당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그러한 결정이 자연법칙에 반한다고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제재 결정의 통지) ① 제재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후 근무일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도핑방지위원회는 근무일 3일 이내에 제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프로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프로단체는 결정을 통지받은 즉시 선수와 해당 구단에 알려야 한다.

- ② 결정 통지서에는 결정 사유와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항소 제기 기간과 방법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9장 제재

제48조(제재의 해석) ①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기는 정규시즌 또는 정규 투어대회로 한다. 시범경기, 포스트시즌 경기, 정규시즌 이외의 단일 대회 및 올스타

전 등 이벤트성 경기는 출전정지 경기수 산정에서 제외되나, 제재 기간 중에는 해당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야구/농구/배구 종목에서 경기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재는 위반이 발생한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부과되는 출전정지 경기 수에 소수점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절상하여 산정한다.
- ③ 야구/농구/배구 종목에서 출전정지 경기수를 산정할 때에는 소속 구단의 경기수로 산정한다.
- ④ 기간이 아닌 경기수를 기준으로 제재가 부과되는 종목의 경우, 제재가 비시즌 기간에 시작되거나 비시즌 기간을 포함하는 때에는 제재 기간이 산정되는 다음 경기부터 출전정지가 시작 또는 재개된다.
- ⑤ 올스타전 개최일 전 비시즌 기간, 시범경기 또는 정규시즌 중에 제재받은 선수는 당해 연도 올스타전 후보 명단에 오르거나 올스타전에 참가할 수 없다.
- ⑥ 하위리그 또는 투어에서 받은 제재도 상위리그와 연계 적용된다.
- ⑦ 선수가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모두 이행하기 전에 은퇴하는 경우, 이후 선수지원요원로 복귀하더라도 남은 제재 기간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제49조(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검출, 사용 또는 보유에 대한 기본 제재) 제9조 제1호, 제2호, 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야구/농구/배구: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전정지
2. 골프: 1년 출전정지

제50조(제재의 감경) 제49조의 제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가 감경될 수 있다.

1. 특정약물 또는 특정방법과 관련된 위반이고, 위반자가 위반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첫 번째 위반에 한하여 제재를 감경 할 수 있다.

2. 선수가 위반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고, 검출된 금지약물이 오염된 제품에서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지목록 국제표준」의 S1(동화작용제), S2(펩티드호르몬, 성장인자, 관련 약물 및 유사제), S4(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약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1조(기타 위반에 대한 기본 제재) ① 제49조 이외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 제3호 또는 제5호 위반

- 가. 야구/농구/배구: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25~50% 출전정지
- 나. 골프: 6개월~1년 출전정지

2. 제9조 제4호 위반

- 가. 야구/농구/배구: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25% 출전정지
- 나. 골프: 6개월 출전정지

3. 제9조 제7호 또는 제8호 위반

- 가. 야구/농구/배구: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전정지~영구 제명
- 나. 골프: 1년 출전정지~영구제명

4. 제9조 제9호 또는 제11호 위반

- 가. 야구/농구/배구: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25% 출전정지~영구 제명
- 나. 골프: 6개월 출전정지~영구제명

5. 제9조 제10호 위반

- 가. 야구/농구/배구: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25% 출전정지
- 나. 골프: 6개월 출전정지

②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의 위반 유형, 위반의 경중, 과실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2조(제재의 가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야구/농구/배구 종목에 대해서는 최대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25%, 골프 종목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의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보유한 경우
2.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여러 차례 사용 또는 보유했거나 복수의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부과되는 출전정지 이상으로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적발 또는 결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결과관리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도적 회피를 하는 등 기만 또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제53조(제재의 면제) ①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자신의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재가 면제될 수 있다.

② 본조가 적용되어 제재가 면제된 경우, 제55조의 재위반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4조(과실 이외 사유에 의한 제재의 추가 감경 또는 유예) 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가 감경 또는 유예될 수 있다.

1. 타인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또는 입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경우, 부과되는 제재의 이분의 일 범위 내에서 제재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2. 다른 증거가 없는 위반을 자인하는 경우, 부과되는 제재의 이분의 일 범위 내에서 제재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재위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야구/농구/배구 종목은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100% 출전정지를, 골프는 2년 출전정지를 부과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처분한다.

제56조(잠재적인 재위반에 관한 특별규정) ① 제55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혐의 통지를 받은 후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첫 번째 위반의 통지를 위하여 합리적 노력을 기울인 이후에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의 추가적인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도핑방지위원회가 증명한 경우에만 추가 위반행위가 두 번째 위반으로 간주된다. 도핑방지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위반행위를 하나의 위반으로 보며, 해당 위반행위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한 제재가 적용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②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출전정지 중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재위반에 대한 출전정지는 이미 부과되어 진행 중인 출전정지와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연속하여 기산한다.
- ③ 재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위반이 10년의 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제57조(비용의 청구) 도핑방지위원회는 위반자에게 위반과 관련된 사건처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의 회수는 제재의 감경 근거로 고려될 수 없다.

제58조(제재의 기산) 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시출전정지 기간이 제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전정지는 제재를 결정한 제재위원회 결정일 또는 청문없는 결정일부터 기산된다. 선수가 제재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제재는 기존의 제재 기간 만료 후에 시작된다.

- ②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부과된 임시출전정지를 준수한 경우, 이행한 임시출전정지는 최종 제재 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부과된 임시출전정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임시출전정지도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자발적으로 임시출전정지의 수용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이행한 임시출전정지는 최종 제재 기간에 포함된다.

④ 경기 불참의 자의성 또는 타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임시출전정지 발효일 이전 기간은 제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9조(출전정지 또는 임시출전정지 중 참가 금지) ① 출전정지 또는 임시출전정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경기 또는 활동에 어떠한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없다.

1. 프로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경기 또는 활동
2. 국제·국내 경기단체가 주관하거나 승인한 경기 또는 활동
3. 정부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수준의 스포츠 활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재 중인 선수는 도핑방지 교육, 소속 구단이 주관하는 훈련 또는 재활 훈련에는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수지원요원은 도핑방지 교육의 참가만 허용된다. 골프 종목의 경우, 다음 연도 대회 출전 자격 획득을 위한 투어 시드전 참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시드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대회 기간 중 최소한 1회의 도핑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임시출전정지 또는 출전정지 중인 선수일지라도 해당 기간 동안 검사 대상이 되며, 도핑방지위원회가 소재지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출전정지 또는 임시출전정지 중 참가 금지 의무 위반) ①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제59조에 따른 참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동일한 제재 기간이 원래의 제재 기간과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연속하여 부과된다. 본조에 따른 제재 기간은 선수의 과실 정도와 사건의 정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의 참가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및 제재 기간의 조정에 대해서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전적으로 결정하며, 이 결정은 제12장 규정에 따른 항소의 대상이 된다.

②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임시출전정지 중 제59조에 따른 참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미 이행한 임시출전정지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 선수지원요원이 출전정지 또는 임시출전정지 중에 있는 선수의 경기 참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선수지원요원은 제9조 제9호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제61조(선수의 신분에 따른 제재기준) ① 프로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우,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 국제 대회 주관단체로부터 받은 제재기준에 비례하여 국내에서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출전정지가 부과된다.(예: 4년 자격정지 ->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전정지(야구/농구/배구) 또는 1년(골프)) 또한, 해당 선수는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 국제대회 주관단체로부터 받은 제재 기간 동안 어떠한 국제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다.

② 프로선수에서 전문체육으로 선수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부과된 제재 기간에 비례하여 「한국도핑방지규정」의 제재기준을 적용한다.(예: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전정지(야구/농구/배구) 또는 1년(골프) -> 4년 자격정지)

③ 전문체육 선수가 프로선수로 신분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체육 선수로 받은 「한국도핑방지규정」의 제재기준이 그대로 인정된다.(예: 4년 자격정지 그대로 적용)

④ 프로와 전문체육 간 신분 전환 후 재전환하고자 하는 선수의 경우, 선수가 제재 부과 당시 받았던 미이행된 제재 기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프로선수와 전문체육 선수가 같은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대회 주관기구를 불문하고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한 시점의 신분을 기준으로 프로선수에게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이, 전문체육 선수에게는 「한국도핑방지규정」이 적용된다.

제10장 출전정지 부과 외 제재

제62조(개인종목의 제재) ① 경기기간 중 검사에서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한

경우 메달, 점수, 상금의 몰수 등 해당 경기에서 획득한 선수의 개인경기 결과는 자동 실효된다. 또한, 검사 시기를 불문하고 해당 선수의 양성 시료가 채취된 날 또는 기타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한 날부터 임시출전정지 또는 출전정지가 개시된 날 사이에 획득한 모든 경기 결과가 실효된다. 다만, 이러한 실효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출전정지 또는 임시출전정지 중 제59조를 위반하여 참가한 대회에서 선수가 획득한 경기결과는 실효된다.
- ③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자의 개인 기록에 의한 포상 자격은 자동 실격된다.

제63조(단체종목의 제재) ① 시즌 중 또는 시즌과 관련하여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경우, 프로단체는 해당 시즌에서 위반 선수가 획득한 모든 또는 일부의 개인 경기 결과를 실효시킬 수 있다. 다만, 위반이 발생한 경기의 승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수의 개인 기록에 의한 포상 자격은 자동 실격된다.

제11장 구단에 대한 후속 조치

제64조(구단에 대한 조치)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구단에 대하여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구단에서 한 시즌에 두 명 이상의 선수가 규정 위반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구단에 대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구단이 제25조의 프로구단 검사명부에 따른 소재지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이 적용된다.
 - 가. 1차: 해당 구단 표적 검사

- 나. 2차: 해당 구단 추가 검사
 - 다. 3차: 해당 구단의 1명 이상의 선수를 ‘프로선수 검사명부’에 포함
- ② 프로단체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구단에 대하여 프로단체의 규정에 따라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장 항소

제65조(항소의 관할)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도핑방지위원회는 제47조에 따른 제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기구에 항소하여야 한다.

제66조(항소기구의 권한) ① 항소기구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한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 규정을 둘 수 있다.
② 항소기구는 항소 제기 전 결정 내용이나 검토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③ 항소기구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관련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항소권자) 제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자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과 도핑방지위원회이다.

제68조(항소 절차) ① 제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항소 취지 및 이유 등을 명시하여 항소기구에 항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소는 제재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항소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프로단체는 항소기구의 청문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④ 항소기구가 달리 명하지 않는 한 항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재위원회의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

- 제69조(항소기구 결정의 통지 및 효력)** ① 항소기구는 항소 청문 종료 후 근무일 20일 이내에 항소 당사자에게 결정 내용, 결정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한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프로단체에 항소기구의 결정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 ③ 항소기구의 결정은 최종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장 기밀 유지

- 제70조(비밀누설금지)** ① 도핑방지위원회,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제재위원회, 기타 도핑방지 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와 프로단체, 구단,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밀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검사 및 시료 분석과 관련된 문서 및 정보
 2. 치료목적사용면책과 관련된 문서 및 정보
 3. 결과관리와 관련된 문서 및 정보
 4. 제재위원회 결정 및 절차 기록
 5.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사 문서 및 정보
- ③ 이미 공개되었거나 도핑방지위원회 이외의 출처에서 공개된 정보는 기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71조(정보의 공개대상)**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된 정보는 프로단체 또는 소속 구단 내의 알 필요가 있는 관계자에게만 제공되며, 통지를 받은 프로단체 또는 소속 구단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일반에 공개할 때까지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72조(제재와 관련한 일반공개)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프로단체와 해당 위반자에게 제재위원회 또는 청문없는 결정을 통지한 후 사건의 처리 내용을 일반에 공개한다.

② 일반공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목
2. 위반 조항
3. 위반자의 성명
4. 관련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5. 제재 결과

③ 제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항소 종료 후 항소 결과 또한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 전이라도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에게 통지한 이후, 위반혐의자의 신원, 관련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과 위반의 내용, 임시출전정지 부과 여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재위원회 또는 항소기구의 결정에 따라 위반이 없었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⑥ 일반공개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누리집에 제2항에 따른 필수 공개정보 게시 후 1개월 또는 부과된 제재 기간 중 긴 기간 동안 공개된다. 게시 의무기간의 만료 이후에는 위반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남겨둔다.

⑦ 도핑방지위원회, 프로단체 및 소속 구단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위반혐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공개 진술에 대한 대응을 제외하고는 특정 사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야 한다.

⑧ 규정을 위반한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내법, 사건의 경증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하거나 선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⑨ 프로단체 또는 구단은 소속 선수의 제재에 대하여 도핑방지위원회의 일반공

개 후 공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

제73조(통계 보고) 도핑방지위원회는 매년 프로스포츠의 도핑관리 활동에 관한 통계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제74조(개인정보)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선수와 선수지원요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및 공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한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은 이 규정의 시행을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수집, 처리, 공개 및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효율적인 도핑관리를 위하여 도핑검사서를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The Anti-Dopi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 ADMAS)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지정한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제14장 교육

제75조(교육의 시행)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와 프로단체 및 구단은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선수와 선수지원요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선수는 최소 연2회(온라인, 대면 교육)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프로 단체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자체 규정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핑방지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금지목록 상의 약물 및 방법
2.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그에 따른 결과조치
3. 도핑의 사회적 영향과 건강상 부작용
4. 시료채취 절차
5. 선수의 권리와 의무
6.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
7. 치료목적사용면책
8. 보충제의 위험관리
9. 도핑이 스포츠정신에 미치는 해로움
10. 소재지정보 요건
11. 도핑 의심 제보

⑤ 도핑방지위원회와 프로단체는 선수지원요원, 의료인, 스포츠행정가 등에 대해서도 도핑방지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장 보칙

제76조(징계 시효) ①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도핑방지규정위반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징계 시효 만료에 대한 증명책임은 도핑방지위원회에 있다.

제77조(규정의 개폐) ①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도핑방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③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제78조(해석) ① 「세계도핑방지규약」과 「한국도핑방지규정」은 이 규정의 해석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② 조문의 제목은 편의를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하며, 규정의 일부 또는 그 자체로 해당 조항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규정에 사용된 ‘일’의 용어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달력의 일자를 의미한다. 일자는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주말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연속하여 산정하며, 마감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을 기한으로 한다.

④ 기간의 기산점을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일부무효) ①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른 절차의 이탈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이와 관련된 발견, 결정 또는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발견, 결과 또는 결정 등을 무효로 할 수 없다.

② 이 규정의 특정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 무효, 시행 불가능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항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그 밖의 규정은 유효하다.

③ 이 규정을 시행할 때, 개인에게 임무 수행을 위한 임명, 자격, 권한이 정당하게 부여되었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이후 그 개인의 임명, 자격 또는 권한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그 개인의 행위는 유효하다.

부칙(2016.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5.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농구, 배구 종목의 경우 2018-2019 정규시즌 종료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위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위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농구, 배구 종목의 경우 2020-2021 포스트시즌 종료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② 제1조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도핑방지규정위반 사건은 위반행위 당시 적용되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처리된다.